

[] 계량기 제조업
[] 계량기 수리업
[] 계량증명업

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5일
신청인	업체명	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사업장 주소	사업장 전화번호	사업장 팩스번호
	공장 주소	공장 전화번호	공장 팩스번호
신청 대상	계량기 종류 및 (제조·수리·증명)범위		

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([] 계량기 제조업, [] 계량기 수리업, [] 계량증명업)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
·구청장
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자체시설명세서 1부(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검사설비명세서 1부(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 3. 계량기명세서 1부(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1. 계량기 제조업 등록의 경우 : 50,000원 2. 계량기 수리업 등록의 경우 : 30,000원 3. 계량증명업 등록의 경우 : 30,000원
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 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
신청인 생년월일:	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						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	→	서류 검토	→	현장요건 조사	→	결재	→	등록증 발급	→	대장 정리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계량업무 담당부서)												